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960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19년 8월 7일
-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15. 12. 15.).
- 나.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 치 :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빌딩
- 나. 규 모 : 지상 2~3층(임차면적 521.4㎡, 전용면적 396.6㎡)
- 다. 사업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방통위 출연기관) 서울센터
- 라. 주요시설 :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마. 주요사업

- 미디어교육 지원 :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

바.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5조(운영비 부담)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부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방송법」 제90조의2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 서울시는 2015년 12월 15일 서울시민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 (Public Access)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회계연도까지는 보조금으로 센터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나,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존 보조금 교부 방식을 「방송법」 제90조의2제7항 및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5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2017회계연도부터 의회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운영비의 20%를 분담하고 있음.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5조(운영비 분담)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분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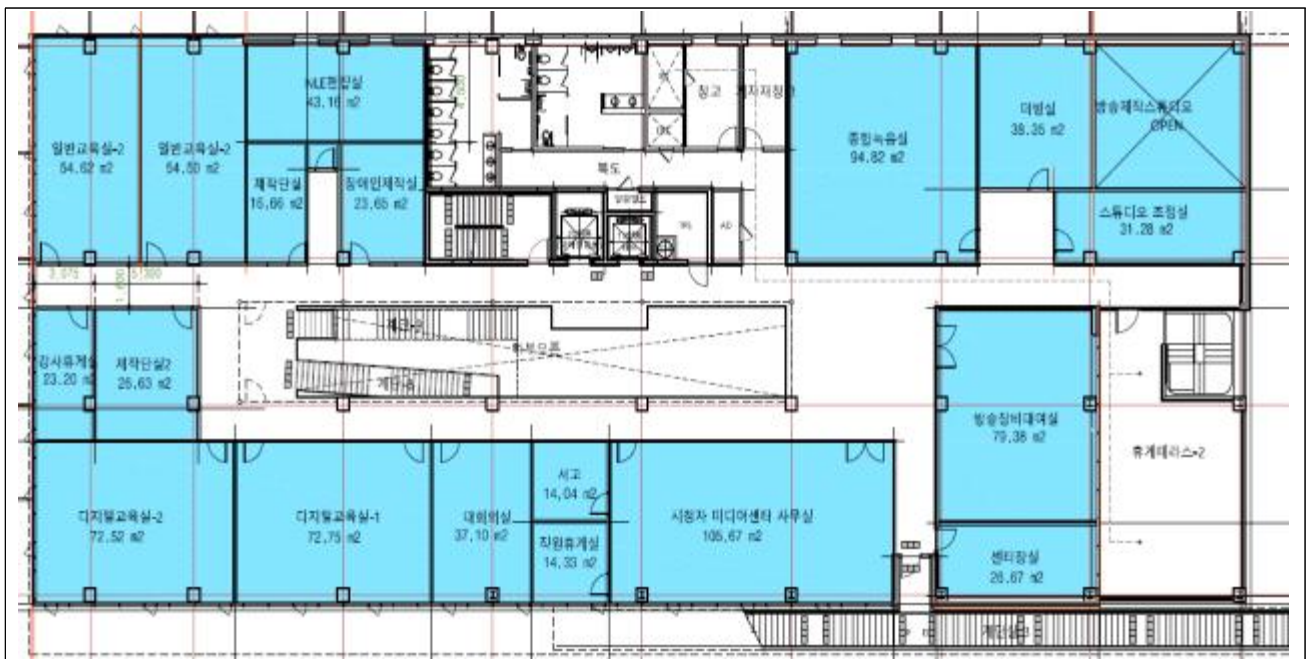
1. (생략)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현재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빌딩의 지상 2~3층을 임차하여 사용 중(임차면적 521.4m²)이며, 임대료는 임차계약 당사자인 성북구에서 부과(연간 931만원)하였으나, 2020년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의 완공에 따라 동 시설 3층(면적 1,343.85m²)을 사용하게 되면서 서울시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동 사무를 위한 임차료가 신규 편성(2020년 예산안 4억 4천3백만원)되었음.

이 또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에 해당하므로 향후 이전과 더불어 전용 면적의 증가, 시설의 증대에 따른 서울시 세출예산은 확대¹⁾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구성(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內)

- 시설 : 스튜디오, 영상편집실, 녹음실, 1인미디어실 등
- 장비 : 캠코더, DSLR, 마이크, 조명 등
- 도면 및 시설 현황(설계안)



1) 임대료의 경우, 향후 세입과 세출(운영비)에 모두 연동되기 때문임.

- 한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9년 7월 18일 제22조의4를 신설하고 출자·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지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 8월 13일 회부되었으나 동 조례에 따른 2020년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정을 보류하였고, 문화본부 문화시설과는 동 조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이사회 회의록 과 결산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음.

제출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인력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 및 장비 유지비, 관리용역비 등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져 총 8억 4천3백만원이 될 예정이며, 이 중 협약에 따른 서울시의 출연금은 1억 5천9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87,738	(x-) 87,738	(x-) 159,388	(x-) 71,650	(x-) 81
출연금	(x-) 87,738	(x-) 87,738	(x-) 159,388	(x-) 71,650	(x-) 81

□ 2020년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출연금	○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87,738,000원 = 87,738천원	○ 인건비 ((58,612천원×5명×1년)+(54,500천원×8명×0.5년))×20% = 102,212천원 ○ 일반수용비(소식지 및 안내 홍보물 제작, 행사비 등 20%) 3,000,000 = 3,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관리비, 인터넷 전용선, 보험료, 우편요금 등) 55,200,000 = 55,200천원 ○ 특근매식비 = 3,888천원 ○ 시설 및 장비 유지비 = 1,640천원 ○ 유류비(차량 유류비) 50,000*12개월 = 600천원 ○ 관리용역비(방범시스템) = 1,440천원 ○ 직무수행경비(센터장 직책수행경비) = 720천원 ○ 공유재산사용료 공제 -745,000,000*2.5%*1/2 = -9,312천원

- 한편,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는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의 건립 완료에 따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외에도 산업기반 생태계가 취약한 동북 2권역에 복합미디어 거점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신규 사업인 '서울 미디어 랩' 운영도 맡게 될 예정임.

서울 미디어 랩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공익적 스타트업과 미디어 관련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입주를 통한 3년 미만의 미디어 교육 등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발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향후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는 동 사업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 제작시설 및 장비 등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고자 함.

- 다만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추진 근거인 “길음뉴타운 공공 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2014)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사업목적과 내용이 현재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과 시설의 규모 등의 차이만 있을 뿐, 서울시 소재 미디어센터의 시설과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수요적 필요성이 적어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

이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 기존의 마을미디어사업과의 차별성을 갖고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간 연계를 통해 상생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사업은 서울시의 문화분야 중흥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문화본부에서 맡는 것보다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2019년 하반기부터 문화본부에서 추진 중이던 ‘마을미디어’도 유사한 이유로 업무가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사업의 소관 정리가 필요할 것²⁾으로 사료됨.

2) 동 사무와 함께 2020년 신규로 편성된 ‘서울 미디어 랩’ 조성·운영 사업도 문화본부에서 추진할 예정인 바, 이에 대한 업무 소관 정리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사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붙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하여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단은 다음과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고 미디어에 관한 교육,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 방송법 제90조의2 제4항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센터를 운영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적정공간을 제공하고,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해 협조·지원한다.
3. 재단은 센터가 서울 전역의 시청자미디어지원 관련 사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력한다.

제3조(설립공간) 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성북구가 성북구 길음동 1286-8에 신축 예정인 길음동 복합문화시설 내에 설립하며,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2018년 하반기까지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4조(임시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성북구가 제공한 공간(성북구 삼성동 5가 171 노블레스빌딩 2~3층)에 2015년 6월에 구축한 센터를 제3조에 따른 공간에 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임시 운영한다.

제5조(운영비 부담)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부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② 운영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사전 협의한다.

제6조(관리 및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관리·운영을 재단에 위탁하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재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발전협의회 구성) ① 센터 운영에 대한 지역 참여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센터 발전협의회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기관, 미디어 관련 학계·단체·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추천 및 의견을 반영한다.

③ 발전협의회는 센터의 사업·정책·예산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재단의 정관 등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8조(분쟁해결) 본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나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의 관할은 센터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9조(협약서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4부 작성하여 당사자 별로 아래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Handwritten signature of the Seoul Metropolitan Mayor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Handwritten signature of the Community Media Foundation Chairman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Handwritten signature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Chairman



성북구청장

Handwritten signature of the Seongbuk-gu Office Chief